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6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6.(목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담 당 자	이승준 사무관(044-203-3983)
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·공포

- 〔국민의 안전강화〕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
- 〔불편사항 합리적 개선〕 코로나 등 재난 시 정기검사 시기 조정 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**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**하고,

○ **코로나 등 재난 시에는,**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'**정기검사**'를 **사업자가 원하는 시기**에 받도록 하는 등 **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**하기 위해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을 1월 7일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힘.

<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>

◈ **(안전 강화)** ❶부탄캔에 '**파열방지기능**' **장착 의무화**로 국민안전강화, ❷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內에 **저장설비와 보호시설**(사무실 등)**이 함께 있는 경우, 양 설비 간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**하여 사업소내 근무 인력 등을 보호

◈ **(불편사항 개선)** ❶**재난時 정기검사 시기를 연장 등 조정**할 수 있도록 허용 ❷서로 시기가 다른 '**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일**'**과** '**정기검사일**'을 수검이 편하도록 **동일 날짜로 일치** ❸**구조용도의 호흡용 '공기충전용기'의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완화**하여 충전 등을 위한 운반편리 제공(2병 이하 운반시 미적용) ❹안전관리원 과다 선임 등을 해소하기 위해 **냉동기의 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** ❺소용량 고압가스 사용자 편의를 위한 **특정고압액체가스**(산소 및 아세틸렌 등 20종) **사용신고기준 상향 조정** (250kg→500kg)

□ 첫째로, **국민의 안전을 강화**하는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① **(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)** 국민생활과 밀접한 **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*** **장착**을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**'23년 1월부터 의무화**하여, 부탄캔 사고의 약 80%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**파편 사고를 예방**하여 **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** 하였음.

* (파열방지장치)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前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파열을 방지하는 장치

※ <참고1> 부탄캔 생산현황, <참고2> 파열방지장치 종류

② **(특정제조시설內 저장설비-보호시설간의 안전기준 마련)**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**특정제조시설내** 함께 위치한 **저장소와 보호시설**(사무실 등)간에 **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**하여, 사고시 **보호시설내 인명**을 **보호**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□ 둘째로, **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**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.

① **(재난時 정기검사 시기 조정)** 코로나 등 **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'정기검사' 시기를 조정**하여, **사업자가**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**원하는 시기에 검사**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.

② **(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및 정기검사 수검일 일치 조정)**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**'안전관리규정 확인·평가'**와 **'정기검사'를 한 날에 동시**에 받도록 하여, 사업자 및 검사자의 **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제거**하였음.

③ **(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 완화)** 인명 보호·구조용의 **'공기충전용기'**의 **운반기준을 완화**하여, 개인차량으로 **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**로 운반시,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**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**하여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**운반의 편리성을 도모**하였음.

④ **(냉동능력 합산기준 완화)**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**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**하여, **냉동기마다 허가**(또는 신고)**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**해야 했던 **애로를 해결**하였음

* (안전관리자선임 감소예) 냉동능력 200톤 4개설비(총 800톤)는 기존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을 4명 선임하였으나, 개정 후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되어 2명만 선임

⑤ **(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 상향)**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, 특정액화고압가스(산소 및 아세틸렌 등) **사용신고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**(250→500kg)하여,

- 횟집 등 생활형 **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**가 **'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' 없이 가스를 사용**(산소의 경우 2병까지)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**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**하였음.

* 산소가스는 건설현장,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,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이상 사용(340kg)시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음

□ 산업부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, **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**이 더욱 **안전하게 조성**되고, 사업자 및 사용자인 **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**이 **크게 해소** 될 것으로 기대하며,

○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**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**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 사무관(☎ 044-203-39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부탄캔 생산현황

□ 제조사별 파열방지 기능 부탄캔 생산비율 현황 ('21년)

(단위 : 천개)

제조사	전체생산량 (A)	파열방지기능 부탄캔 (B)	파열방지기능 부탄캔 생산비율 (B/A)
A사	57,279	23,507	41.04 %
B사	80,092	4,499	5.62 %
C사	65,031	17,742	27.28 %
D사	8,234	4,507	54.74 %
E사	5,964	-	-
F사	2,219	-	-
총 계	**218,819**	**50,255**	**22.97 %**

□ 부탄캔 국내생산·수출량 및 세계시장 규모

(단위 : 천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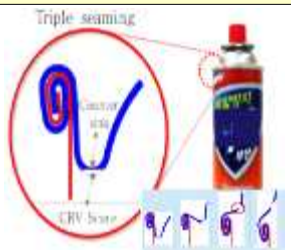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국내생산	**479,934**	**475,553**	**494,480**	**521,015**	**538,819**
내수판매	209,934	205,553	204,480	211,015	218,819
수 출	270,000	270,000	290,000	310,000	320,000
세계시장	**670,000**	**680,000**	**700,000**	**730,000**	**740,000**

□ 세계시장 국가별 수요량 : 약 7.4억 개 ('21년, 추정치)

(단위 : 백만개)

국 가	계	한 국	일 본	미 국	중 국	호 주	베트남	기 타
수 량	740	218	130	62	100	20	10	200

참고2 파열방지장치 종류 (예시)

종 류	개 요	사 진	
CRV	- 내부 압력 상승 시 상부 돔 변형과 동시에 돔에 설치된 스코어(Score)에서 가스 방출로 폭발 방지		
RVR	- 내부 압력 상승 시 상부 돔 변형과 함께 림(Rim)에 설치된 스코어에서 가스 방출로 폭발 방지		